

# 추가약정서

(전자채권담보대출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20    년    월    일

본    인 \_\_\_\_\_ (인)  
주    소 \_\_\_\_\_

본인은 본 약정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_\_\_\_년 \_\_\_\_월 \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이하 “원 약정서”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제1조 (개별대출의 신청 및 실행)

- ① 별도로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에 의해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에 포괄양도한 전자채권 중 대출을 받고자 하는 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하여 채권양도통지를 요청하기로 하며, 은행은 금융결제원에 채권양도통지 등록 및 시점확인한 후 대출여부를 승인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출승인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출실행하기로 하며, 대출금액은 만기까지의 이자를 차감하고 본인이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관시에 은행에 신고한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③ 은행의 인터넷뱅킹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 관리영업점에 대출 실행을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관리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건은 제1항에 의해 전자적으로 채권양도통지가 완료된 건에 한 합니다.
  1. 청구대출신청서(전자채권담보대출용)
  2.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원본)
  3. 기타 귀 행이 요청하는 서류
- ④ 개별대출은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약정기한 범위내에서 신청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 ⑤ 전자채권의 양도통지요청 및 대출신청, 대출실행은 당해 전자채권 지급기일 2영업일전까지만 가능하며 개별대출의 만기일은 최장 180일 이내에서 당해 전자채권의 지급기일로 합니다.

## 제2조 (개별대출금 상환)

- ①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당해 전자채권의 지급기일에 은행이 동 채권의 채무자인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아 변제에 총당하고, 구매기업이 지급기일에 당해 전자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보증전자채권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특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취급한 경우에는 본인이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전자채권에 대하여 지급정지 가처분 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권리 다툼이 발생하여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③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날까지 은행의 은행계정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3조 (대출의 제한)

- ① 본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규여신금지 기업 또는 은행의 내규에 의한 신규여신금지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은행은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 전산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은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은행 전산상의 장애로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③ 은행이 한 채권양도통지의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은행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④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전자채권이 사고신고, 압류 및 가압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 구매기업의 미결제채권보유 및 거래정지 등 담보취득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제4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다음 각호로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귀 행에는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1. 입금계좌의 거래정지, 계좌이상 등의 사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귀 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5조 (상환의무)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채권이 은행으로 통보되는 과정에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전자채권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인터넷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실행 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정당한 전자채권 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실행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당해 전자채권담보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은행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1. 은행에 양도한 전자채권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구매기업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해 발행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금융결제원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에 의해 거래정지처분된 경우
- 2. 허위, 위·변조, 자금유통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전자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전자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 제7조 (지연이자 수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할인료 또는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구매기업이 「상생협력법」 상 납품대금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매기업이 물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전자채권 담보대출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 ② 구매기업이 「하도급법」 상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매기업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전자채권 담보대출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제8조 (정보제공의 동의)**

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인의 개별대출 실행내역 등을 금융결제원, 발행은행, 구매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9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본 추가약정, 원 약정서, 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제10조 (기타 특약사항)**

|  |    |     |
|--|----|-----|
|  | 본인 | (인) |
|--|----|-----|